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46
----------	-----

2017. 12. 22(금)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7년 11월 21일

다. 회부일자 : 2017년 11월 23일

라. 상정일자 : 2017년 12월 14일

-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오진섭 행정국장)

가. 제안사유

○ 근거 법령이 없고 불필요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

○ 복잡한 법령을 알기 쉬운 문장으로 간결화

나. 주요내용

○ 사무의 위임 감독 조문 개정(안 제3조)

- 위임사무 인사권한 행사 시 도지사 즉시 보고 내용 삭제

○ 위임된 사무의 재위임 금지 조문 간결화(안 제5조)

- 소속 행정기관의 나열로 복잡한 법조문 간결화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호)

- 위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복잡한 법령을 알기 쉬운 문장으로 간결화 하는 것임.
- 시장·군수가 위임사무와 관련하여 인사권한을 행사한 경우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 제5조 “위임처리 금지”조항에서는 시장, 군수,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 소방서장, 충북도립대학총장 등 소속 행정기관을 나열하던 기존 조항을 시장·군수, 도의회사무처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조문을 간결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46호
의결 연월일	2017년 월 일 (제360회)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17년 11월 21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746
----------	-----

제출연월일 : 2017년 11월 2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근거 법령이 없고 불필요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
- 복잡한 법령을 알기 쉬운 문장으로 간결화

2. 주요내용

- 사무의 위임 감독 조문 개정(안 제3조)
 - 위임사무 인사권한 행사 시 도지사 즉시 보고 내용 삭제
- 위임된 사무의 재위임 금지 조문 간결화(안 제5조)
 - 소속 행정기관의 나열로 복잡한 법조문 간결화

3. 의안전문 : 불 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불 임

5. 관계법령 발췌 : 불 임

6. 비용추계서 : 해 당 없 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임처리 금지) 시장·군수, 도의회 사무처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감독) ①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경우에 도지사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목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중 인사권한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5조(위임처리 금지) 시장, 군수,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 소방서장, 충북도립대학총장, 자치연수원장, 농업기술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축산위생연구소장, 농산사업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 내수면연구소장, 북부출장소장 및 남부출장소장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 처리할 수 없다	제5조(위임처리 금지) 시장·군수, 도의회사무처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관 계 법 령 발 체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